

자 료

하수도법시행령중개정령

● 대통령령 제15,473호

1997년 9월 5일

하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특별시 및 광역시”로 하고, 동항 제1호중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장”을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으로 하며, 동항 제2호중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특별시 및 광역시”로,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장”을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으로 하고, 동항 제3호중 “서울특별시 시장·직할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서울특별시 시장 및 직할시장”을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공공하수도”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제3항중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특별시 및 광역시”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인가신청내용에 법 제13조의2 제1항 각호외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에 관한 의견서를 신청서와 함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도서 등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수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중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설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는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인가한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인가내용을 당해 지방자치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마을하수도의 사업계획서) ①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을하수도의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시행의 목적 및 기본방침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및 명칭
5.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
6. 사업시행기간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에 관계되는 도서에 한한다.

1.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

- 2. 계획하수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 3.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
- 4. 마을하수도시설(부속설비를 포함한다)의 평면도와 처리계통이 표시된 단면도
- 5. 수용 또는 사용한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6. 기타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도면

제6조의3(협의내용의 고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마친 때에는 제6조의제2항 각호의 사항과 동조 제2항제5호의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 7. 하수도시설을 운영·관리할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관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업무의 위탁) 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제7조제3항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7조제3항제7호의 기관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한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의 수질기준은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의 수질기준에 의한다.

제12조 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마을하수도에 의하여 처리되는 방류수의 수질검사는 월1회이상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2호중 “공공하수도공사의 급시를 요하는”을 “공공하수도의 시급한 시공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중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1.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자에 대한 공사의 중지·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의 명령. 다만, 공사시행자가 시·도지사인 경우를 제외한다.
- 2.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외의 공공하수도 시설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의 명령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마을하수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
- 2.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중지·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의 명령
- 3.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의 명령

제24조제4항중 “환경부령으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로 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호 나목·다목 및 제23조제1항중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장”을 각각 “특별시 및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나목 및 제19조중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각각 “특별시 및 광역시”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다목 및 제2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1997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 下水道法施行令 改正理由

農漁村에서 발생하는 소량의 下水를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마을 下水道의 認可節次를 정하고, 소규모인 마을 下水道의 水質檢査를 일반 下水終末處理施設의 경우보다 그 檢査週期를 완화하며, 下水道의 운영·관리업무를 民間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下水終末處理施設事業의 經濟性·技術性을 검토하기 위한 下水道諮問委員會의 구성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 가. 下水終末處理施設의 設置認可를 위한 經濟性·技術性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環境部長官은 下水道諮問委員會를 둘 수 있도록 함(令 第5條第4項)
- 나. 農漁村地域에서 발생하는 소량의 下水를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마을 下水道의 事業計劃書의 기재사항과 添附圖書를 정하고, 마을 下水道의 放流水 水質檢査를 月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令 第6條의2 및 第12條 第2項)
- 다. 下水道施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下水道 관리업무를 民間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令 第7條第3項)
- 라. 마을 下水道의 事業計劃에 대한 環境部長官의 協議權을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위임함(令 第22條第2項).

〈법제처 제공〉

수도관로의 확장 및 재구축등 발리섬 이부구조 개선목적

세계은행!! 인도네시아에 1억 1천만불 차관 승인



세계은행은 1960년 이래로 관광 및 경제개발을 통해 도시화된 인도네시아의 남 발리섬에 하부구조 개선을 위한 차관지원을 승인하였다. 이 차관은 수도관로의 확장 및 재구축, 도로의 개선, 홍수통제 및 위생시설 개선등을 위한 수많은 소규모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집행될 계획이다.

이 사업들은 수도와 폐기물 처리분야 등의 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적 지원과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민영화 부분을 활성화 할 것입니다. 이 섬의 역사적 측면의 고려와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려는 지자체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가적으로 사업의 설계, 실행, 환경관리와 공공단체의 재정적애로등 여러측면에서 정부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인구성장률은 아시아지역에서 가장높은 年평균 6%에 이르고 있으며 1990년의 경우에는 그 수가 약 55,000,000명 정도로 도심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2000년에는 그 숫자가 90,000,000명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오늘날 인도네시아에서는 도시거주 가구의 약 20%정도만이 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자료출처 : JOURNAL AWWA 10. 1997 〉

하수도법시행규칙중개정령

◎ 환경부부령 제31호

1997년 9월 19일

하수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하수종말처리시설의 인가) ① 영 제5조제 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라 함은 하수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용량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를 말한다.

② 영 제5조제2항 제8호에서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도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도면 및 서류를 말한다.

1. 하수종말처리시설(부속설비를 포함한다)의 평면도 수위관계도 및 구조도
2. 기타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도면 및 서류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하수도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부 상하수도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하수도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하수도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하수도시설 관리업무의 위탁) 영 제7조제3항제7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이 동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사업자인 법인
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문 상하수도분야 및 환경부문 수질관리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법인
4.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업자인 법인

제7조제2항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8호의2서식으로”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호를 삭제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

하수관거공사관계자현황서				배수구역의 명칭 또는 하수처리구역의 명칭					작성자 직명 성명				
시공기간	위치	관거구분	규격(mm)	설치규모(m)	도면No.	공사관계자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준공검시자			
		<input type="checkbox"/> 암거 <input type="checkbox"/> 개거				기관명							
		<input type="checkbox"/> 암거 <input type="checkbox"/> 개거				대표자							
		<input type="checkbox"/> 암거 <input type="checkbox"/> 개거				담당자							
		<input type="checkbox"/> 암거 <input type="checkbox"/> 개거				기관명							
		<input type="checkbox"/> 암거 <input type="checkbox"/> 개거				대표자							
		<input type="checkbox"/> 암거 <input type="checkbox"/> 개거				담당자							
		<input type="checkbox"/> 암거 <input type="checkbox"/> 개거				기관명							
		<input type="checkbox"/> 암거 <input type="checkbox"/> 개거				대표자							
		<input type="checkbox"/> 암거 <input type="checkbox"/> 개거				담당자							
		<input type="checkbox"/> 암거 <input type="checkbox"/> 개거				기관명							
		<input type="checkbox"/> 암거 <input type="checkbox"/> 개거				대표자							
		<input type="checkbox"/> 암거 <input type="checkbox"/> 개거				담당자							

51318-33511버
1997. 9. 3 승인

364×257mm
비존용지(1종)70g/m²

◆ 개정이유

하수도를 효율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하수도시설 관리업무의 민간위탁대상기관을 확대하고, 하수도사업의 경제성·기술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하수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하수도법시행령이 개정(1997. 9. 5, 대통령령 제15473호)됨에 따라 10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하수도시설 관리업무의 민간위탁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하수도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하수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하수도종말처리시설의 변경인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하수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용량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

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대상에서 제외하여 하수도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제2조제1항).

- 나. 하수도사업의 기술성·경제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도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부원으로 구성함(제2조의제1항)
-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자 등을 하수도시설 관리업무의 위탁대상기관으로 정함(제3조의2).
- 라. 하수관거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관거의 설계·시공·감리 및 준공관계자의 성명을 기재한 하수관거공사관계자현황서를 작성·보관하도록 함(제7조제2항 및 별지 제8호의2서식)

〈환경부 제공〉